

## 1. 원자력안전법

제105조(전국 환경방사능 감시) ① 위원회는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방사능측정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측정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## 2.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(방사선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)

###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시설기준

#### 제1관 개봉선원

제17조 (개봉선원의 생산시설) ②개봉선원 생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2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

가. 생산시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

나.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

제19조 (사용시설 및 분배시설) ①개봉선원의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3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

가. 사용시설안 및 분배시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

나.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

제20조 (저장시설) 개봉선원 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2. 저장시설에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

설치할 것

**제21조 (보관시설)** 개봉선원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보관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2. 제19조제1항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

**제22조 (처리시설)** 개봉선원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처리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2. 제19조제1항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

**제23조 (배출시설)** 개봉선원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배출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2. 제19조제1항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

## 제2관 밀봉선원

**제27조 (사용시설 및 분배시설)** ① 밀봉선원의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2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

가.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

나.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

**제28조 (저장시설)** 밀봉선원의 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2.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

**제29조 (보관시설)** 폐기하는 밀봉선원의 보관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4.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

## 제3관 방사선발생장치

**제33조 (사용시설)** ①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사용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
  - 가. 사용시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
  - 나.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

## 6.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4장(방사선·능 감시기의 설치·운영)

**제19조(공항·항만에의 감시기 설치등)**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항·항만에 방사선·방사능 감시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함.

**제20조(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)** 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(이하 "재활용고철취급자"라 함)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시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함.

**제21조(유익물질의 검출 및 분석)** 재활용고철취급자는 감시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

## 3.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-49호 제4조

**제4조(선량한도의 적용)**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별표 1의 제3호에 따라 선량한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.

2.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에 대한 선량은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당 0.1 mSv 및 시간당 20  $\mu$ Sv까지 허용할 수 있다.